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-4호

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98호(2008.09.04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은평구고시 제 2011-11호(2011.02.24.)로 정비구역(변경)지정 고시, 은평구고시 제2011-55호(2011.09.15.)로 사업시행인가, 은평구고시 제2013-73호(2013.09.12.)로 정비구역(변경)지정 고시, 은평구고시 제2015-80호(2015.10.01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, 은평구고시 제 2017-14호(2017.02.09.)로 정비구역(변경)지정 고시된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
2. 또한, 같은법 제32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2018년 1월 4일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,8,35번지 일대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박성수)
- 주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3-2, 4층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
-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

마. 사업시행 변경인가일 : 2015. 10. 01.

바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구분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율 (%)	층수 (최고높이)	건축물의 용도
기정	35,246	7,769.53	22.04	129,481.88	231.93	지하4층~지상22층 (65.65m)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변경	35,246	7,860.13	22.30	128,621.79	230.22	지하4층~지상22층 (65.65m)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
사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공급 구분		주택의 형 태	동 수	세대 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															
					84 P	84 TA	84 TB	84 TC	84 TD	84 TE	76 T	74 T	59 P	59 TA	59 TB	51 PA	41 TA	51 PB	51 T	41 TA	41 TB	38 T
기 정	계	공동주택 복리시설	11	879	172	42	42	38	74	42	7	42	113	77	38	34	8	8	15	7	45	75
	분 양	공동주택 복리시설	10	729	172	42	42	38	74	42	7	42	113	77	38	34	8					
	임 대	공동주택 복리시설	1	150														8	15	7	45	75

공급 구분		주택의 형 태	동 수	세대 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													
					84 P	84 TA	84 TB	84 TC	84 TD	84 TE	76 T	74 T	59 P	59 TA	59 TB	51 P	51 T	41 TA	41 TB	39 T
변 경	계	공동주택 복리시설	11	879	172	42	42	38	74	42	7	42	113	77	38	42	15	15	45	75
	분 양	공동주택 복리시설	10	747	172	42	42	38	74	42	7	42	113	77	38	42	15	3		
	임 대	공동주택 복리시설	1	132														12	45	75

아. 변경 사유

-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평면개선에 따른 면적 변경
- 주변단지와 조화를 위한 입면 변경
- 임대주택 세대수 축소(17% → 15%)

자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(은평구청 주거재생과(☎02-351-7365)에 비치)